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8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0.

발 의 자 : 박찬대 · 노종면 · 허종식
유동수 · 맹성규 · 이훈기
김교홍 · 정일영 · 이용우
박성준 · 문진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, 매도명령 등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,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나 사용의 무기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장기간 공사 중단 등의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·계약해지 등 사법상 수단 외에 개발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.

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가 상업·업무·관광 등 당초 계획된 용도로 적기에 이용되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상권 형성, 정주환경 조성,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,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

우 시·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,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9 신설).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9(조성토지 소유자의 개발이행의무 및 이행강제금) ① 시·도

지사는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중단되는 등 장기 유휴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(이하 이 조에서 “시정명령”이라 한다).

② 시·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성토지의 공시가격, 분양가격 또는 그 밖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 절차, 이행강제금의 세부 산정기준, 건축공사 중단 등 유휴상

태의 판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) ① 제9조의9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9조의9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하는 등 장기간 유휴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시정명령에 한하여 제9조의9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9(조성토지 소유자의 개발이행의무 및 이행강제금) ①</u> <u>시·도지사는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중단되는 등 장기간 유희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(이하 이 조에서 “시정명령”이라 한다).</u> <u>② 시·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성토지의 공시가격, 분양가격 또는 그 밖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u> <u>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</u>

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
에 2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
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
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
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
부과·징수 절차, 이행강제금의
세부 산정기준, 건축공사 중단
등 유휴상태의 판단기준 등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정한다.